

모델 12

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 (한-중 FTA)

01 | 개요

-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수입하여, 우리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생산 후 한-중 FTA 특혜 적용받아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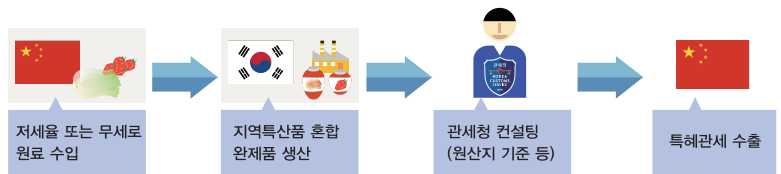
02 | 비즈니스 모델

- 한중 FTA에서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만, 가공식품 원재료에 상관없이 생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산으로 인정 가능
 - FTA 체결국으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기초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함으로써 원재료비 절감, 고품질 유지 및 한류의 영향으로 '한국산'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 가능

한-중 FTA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(CC)이므로,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FTA특혜 활용가능

※ (적용가능품목) 김치, 조제 분유, 라면, 소시지, 햄, 참치캔, 소주, 베이커리 제품, 믹스커피, 잼 등

국내가공 FTA특혜 활용 모델



03 | 활용 및 확산분야

-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식품가공업 등
- 한-중 FTA